

제27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 4. 2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년 4월 24일
전문위원 배 금 택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2020 - 17

나. 제 출 자 : 강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20년 4월 13일

라. 회부일자 : 2020년 4월 20일

2. 개정이유

국가 정책사업과 지역현안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원 조정을 통한 안정적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등 국가정책 추진에 따른 인력 확충

나.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신고 전환에 따른 전담인력 확보

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의 한시정원 신설

3.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 1,641명 → 1,675명 (증 34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610명 → 1,644명 (증 34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1명 → 31명 (변동 없음)

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3조 관련 별표 3)

○ 정원 총계 : 1,641명 → 1,675명 (증 34명)

○ 일반직 계 : 1,636명 → 1,670명 (증 34명)

- 5급 : 71명 → 72명 (증 1명)

- 6급 이하 : 1,555명 → 1,588명 (증 33명)

다. '신청사건립추진단' 한시정원의 운영(안 제5조, 별표4)

○ 정 원 : 6명(5급 1명, 6급 이하 5명)

○ 운영시한 : 2023년 6월 30일까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8조 및 제30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협의사항

1) 기획예산과 : 규제심사

2) 감사담당관 : 부패영향평가

3) 가족정책과 : 성별영향평가

라. 입법예고(2020. 3. 10. ~ 3. 30)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등 국가정책의 추진과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신고 전환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및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 인력에 대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조정

- 정원의 총수를 기존 1,641명에서 1,675명으로 34명 증원
- 집행기관의 정원을 1,610명에서 1,644명으로 34명 증원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1명 (변동 없음)

○ [안 제3조 관련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 직급별 정원 조정

- 정원 총계를 1,641명에서 1,675명으로 34명 증원
- 일반직 계를 1,636명에서 1,670명으로 34명 증원
 - 5급 71명을 72명으로 1명 증원
 - 6급 이하 1,555명을 1,588명으로 33명 증원

○ [안 제5조 신설] 한시기구의 정원

- 신청사건립추진단으로 5급 1명, 6급 이하 5명으로 6명 증원
- 운영시한을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함

다.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등 국가정책의 추진과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신고 전환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및 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한 인력확보를 위해 정원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로 부터 통보받은 기준인건비¹⁾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30조에서는 정원의 총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1) 기준인건비제: 기존 총액인건비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총정원과 인건비 총액 한도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대신,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제시하는 기준인건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2014.3.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도입함

-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 인건비 최종산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관련 20명,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등 국가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5명,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담당인력 3명 등 2020년도 우리구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총 28명을 증원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한시기구의 설치운영에 따라 원활한 청사건립을 위해 5급 단장 1명을 비롯한 총 6명으로 구성된 신청사건립추진단을 한시 정원으로 하여 증원하려는 사항임
- 이에 따라 소요되는 인건비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연 2.8%를 반영하여 구비예산이 2020년 3억 4,480만 3천원을 시작으로 5년간 총 27억 8,703만 2천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마련과 향후 사업별 적정 인력 배치 등 체계적인 인력 운용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1

정원 조정 세부 내역

구 총 정원 조정(안 제2조) : 1,641명 → 1,675명

구분	정원의 총수	집행기관	의회사무기구
현행	1,641	1,610	31
변경	1,675	1,644	31
증감	+34	+34	

※ 분야별 정원 조정 세부내역

연번	세부내역	정원(명)	비고
	(합계)	+34	
1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시군구 총괄)	1	행정 +1
2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복지)	3	사회복지 +3
3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간호)	16	간호 +16
4	다함께돌봄(초등돌봄)	1	행정 +1
5	위기청소년 지원	1	사회복지 +1
6	자치단체 정보공개 전담인력 보강	1	행정 +1
7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2	사회복지 +2
8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3	세무 +3
9	원활한 신청사 건립 추진	6	한시정원

한시기구의 정원 신설(안 제5조) : 6명

※ 한시정원 세부내역

기구명	구분	정원(명)	비고
신청사건립추진단	계	6	
	단장	1	행정 +1
	반장	1	행정 또는 시설 +1
	팀원	4	행정 +2, 시설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의 발생요인 : 세출예산 순증(인건비)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2020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기준

나. 사회복지직·간호직 신규 공무원 인건비는 시비 보조 포함

다. 한시정원은 운영시한(3년) 동안의 인건비 반영

라. 공무원 봉급 인상률 2.8%(‘20년)을 적용하여 향후 5년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세입	시비	254,250	522,738	537,375	552,421	567,889	2,434,673
	소계(a)	254,250	522,738	537,375	552,421	567,889	2,434,673
세출	시비	254,250	522,738	537,375	552,421	567,889	2,434,673
	구비	344,803	708,916	728,765	580,725	423,823	2,787,032
	소계(b)	599,053	1,231,654	1,266,140	1,133,146	991,712	5,221,705
총 비용(b-a)		344,803	708,916	728,765	580,725	423,823	2,787,032

※ 2020년 인건비 : 6개월분 산정(2020. 7. 1. 이후 임용 예정)

4.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구분	인원	비용	산출내역	비고
(합계)	34명	1,198,107천원		
행정·세무	6명	180,000천원	30,000,000원 × 6명	9급/전액 구비
사회복지	3명	90,000천원	30,000,000원 × 3명	9급/시비 50% 보조
사회복지	3명	90,000천원	30,000,000원 × 3명	9급/시비 75% 보조
간호직	16명	528,000천원	33,000,000원 × 16명	8급/시비 75% 보조
한시정원	6명	310,107천원	310,107,000원 × 1식	해당 직급/전액 구비

※ 행안부(서울시) 신규임용자 인건비 집행 기준 참조

※ 한시정원의 경우 해당 직급(5급 1, 6급 1, 7급 2, 8급 2)의 평균 봉급액 참조

5.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자체수입	344,803	708,916	728,765	580,725	423,823	2,787,032
의존재원 (시비보조)	254,250	522,738	537,375	552,421	567,889	2,434,673

6. 작성자 : 행정지원과 소윤희(☎ 2600-6032)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28조(한시정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 조정할 수 없다.
- 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